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4890

제출연월일 : 2024. 10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 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,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인 민 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전 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"를 "민원 처리 담당자의 제3항에 따른 종료 조치나 제4항에 따른 요구"로 한다.
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·폭행,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·호출장치·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
- 2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, 녹음전화 등의 운영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 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

- 가. 폭언 · 폭행
- 나.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
- 다.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·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
- 라.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·정신 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
- 4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
- 5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
- 6. 폭언·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
- 7.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·절차적 지원
- 8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
- 9.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.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.
- 10.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・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

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- ③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료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1. 전화나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·지속적으로 욕설,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,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(이하 "성희롱"이라 한다)를 한 경우
- 2. 제2항제9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

제11조제1항 중 "사람"을 "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으로 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3(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·정지)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- 1.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 등을 비정상적으로 이용

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·중복적으로 제기하여 행정기 관의 공무나 다른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
- 2. 다른 민원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행정기관의 공무나 다른 민원인 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
- 4. 그 밖에 행정기관의 공무나 다른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2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민원 내용에 욕설,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,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의 장은 「청원법」에 따른 청원, 「행정절차법」 제52 조의2에 따른 국민제안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3조에 따른 제안 으로 처리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 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성격,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·관련성, 공무 방해 의도 유무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·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했 혅

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) ① (생략)

의 폭언·폭행, 목적이 정당하 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 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·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아 개 정

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 |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·폭행,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 체적 ·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 료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 기기・호출장치・보호조치음 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
 - 2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 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, 녹음전화 등의 운영
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 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

- 가. 폭언 · 폭행
- 나. 무기·흉기 등 위험한 물 건의 소지
- 다.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

 반복・중복 민원 제기를

 통한 공무 방해 행위
- 라.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 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히 는 행위
- 4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
- 5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치료 및 상담 지원
- 6. 폭언·폭행 등 형사처벌 규 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 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
- 7.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 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 를 위한 행정적·절차적 지원

<신 설>

- 8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
- 9.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
 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
 정.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
 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
 정할 수 있다.
- 10.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③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료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1. 전화나 면담 중 민원인이 반 복적·지속적으로 욕설,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, 성적

- ③ (생략)
- ④ 행정기관의 장은 <u>제3항에 따</u> 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제11조(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·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(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편의를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·③ (생략) <신설>

인	언	동	등	을	통	하ㅇ	립 .	성경	닉	굴
욕?	감	또	는	혐	오	.감극	슬	느	<i>ग</i>]	게
하-	느	행	위(•	이ㅎ	}	"성	희	롱"	(ه	라
한1	다)	를	한	경.	우					

- 2. 제2항제9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방해한 경우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------ <u>민원 처리</u> 담당자의 제3항에 따른 종료 조 <u>치나 제4항에 따른 요구</u>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2조의3(전자민원창구 등의 이

용 제한・정지)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운영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 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 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라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 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 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다.

- 1.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전자적 수단 등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·중복적으로 제기하여 행정기관의 공무나다른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2. 다른 민원인의 정보를 도용 하여 행정기관의 공무나 다른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을 방 해하는 행위

제21조(민원 처리의 예외) 행정기 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(법정민 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 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 <신 설>

리) ① (생략)

<실	설>
` L	L /

3	. 고의	또는	중대	한 과실]로	전
	자민원	l 창구	또는	통합	전자	민
	원창구	사에 정	아를	일으키]는	행
	 위					

4. 그 밖에 행정기관의 공무나 다른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이용 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
세21조(민원	처리의	예외)	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- 10. 민원 내용에 욕설,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,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

제23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 제23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 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행정기관의 장은 「청원법」

② (생략)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민원의 성격,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·관련성 및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에 따른 청원,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제안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3조에 따른 제안으로 처리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 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민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 여부를 결정할때에는 해당 민원의 성격, 종전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・관련성, 공무 방해 의도 유무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